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23
----------	------

2026년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소영철 의원(찬성자 9명)  
나. 제안일 : 2026년 4월 6일  
다. 회부일 : 2026년 4월 7일  
라. 상정일 :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4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소영철 의원)

#### 가. 제안이유

-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과학기술 인식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과학기술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시민상 수상대상자에 '과학기술상'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 서울특별시시민상 시상 방법 및 시기에 '과학기술상'을 신설함(안 제4조 제1항제12호 신설).
- 시상종류별 시상인원에 '과학기술상' 6명(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을 신설함(별표 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6. 4. 10. ~ 4. 14.)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가. 조례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시민상(이하 '시민상')”에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이하 '과학기술상')”을 신설(안 제2조제1항제12호)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소재 과학기술인 중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서울특별시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과학기술 인식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제1항제12호 신설)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 4월 21일(제1항제12호)
별표 1	-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6명(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신설 - 시상인원 수정(계 252→258, 대상 13→14, 최우수상 67→69, 우수상 172→175)

- ※ 서울시는 현재 봉사상, 문화상, 환경상, 복지상, 어린이 및 청소년상, 성평등상, 교통문화상, 건축상, 건설상, 안전상 등 총 11개 분야에 걸쳐 그 시상 방법과 시기를 달리 하여 '시민상'을 수여하고 있음.

<p>「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의 발전과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 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시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서울특별시시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봉사상</li> <li>2. 서울특별시문화상</li> <li>3. 서울특별시환경상</li> <li>4. 서울특별시복지상</li> <li>5.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li> <li>6. 서울특별시청년상</li> <li>7. 서울특별시성평등상</li> <li>8.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li> <li>9. 서울특별시건축상</li> <li>10. 서울특별시건설상</li> <li>11. 서울특별시안전상</li> </ol> <p>② 제1항의 시상종류별 시상인원은 별표1과 같으며 세부시상분야는 각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p>
--

〈 ‘시민상’ 종류별 시상인원 및 시상일 〉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조례 [별표 1] 기준)				시상일(조례 제4조 기준)	주관과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2	13	67	172		
봉 사 상	21	1	5	15	· 10월 28일	시민협력과
문 화 상	14	-	14	-	· 10월 20일	문화정책과
환 경 상	21	1	5	15	· 6월 5일	기후환경정책과
복 지 상	16	2	5	9	· 복지자원봉사· 후원자 및 종사자 분야 : 9월 7일 · 장애인인권 분야 : 장애인주간 (4월 20일~4월 26일)	일반: 복지정책과 장애 장애인복지과
어린이 및 청소년상	94	3	19	72	· 어린이 및 소년분야 : 5월 5일 · 청소년지도분야 : 성년의 날 (5월 셋째주 월요일)	청소년정책과
청년상	20	1	3	16	·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	청년정책담당관
성평등상	6	1	2	3	· 양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	양성평등담당관
교통문화상	6	1	2	3	· 10월 31일	교통정책과
건 축 상	31	1	5	25	· 6월 18일	한옥건축자산과
건 설 상	16	1	5	10	· 9월 10일	기술심사담당관
안 전 상	7	1	2	4	· 10월 21일	재난안전예방과

※ 출처 : 2026년 4월 8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최근 3년간 ‘시민상’ 시상종류별 수상후보자 접수 및 시상 현황 〉

(단위 : 명)

분야	총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접수 인원	시상 인원	경쟁률	접수 인원	시상 인원	경쟁률	접수 인원	시상 인원	경쟁률	접수 인원	시상 인원	경쟁률
계	2,171	683	3.18	714	231	3.09	660	228	2.89	797	224	3.56
봉 사 상	323	63	5.13	106	21	5.05	115	21	5.48	102	21	4.86
문 화 상	224	35	6.40	83	11	7.55	61	12	5.08	80	12	6.67

분야	총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접수 인원	시상 인원	경쟁률	접수 인원	시상 인원	경쟁률	접수 인원	시상 인원	경쟁률	접수 인원	시상 인원	경쟁률
환경상	138	60	2.30	53	20	2.65	45	21	2.14	40	19	2.11
복지상	193	48	4.02	55	16	3.44	60	16	3.75	78	16	4.88
어린이 및 청소년상	539	293	1.84	187	106	1.76	166	98	1.69	186	89	2.09
청년상*	81	8	10.13	-	-	-	-	-	-	81	8	10.13
성평등상	27	17	1.58	9	5	1.8	9	6	1.5	9	6	1.5
교통문화상	38	16	2.38	7	4	1.75	20	6	3.33	11	6	1.83
건축상	267	26	10.27	106	9	11.78	72	9	8.00	89	8	11.13
건설상	74	48	1.54	23	16	1.44	30	16	1.88	21	16	1.31
안전상	74	21	3.52	30	7	4.29	22	7	3.14	22	7	3.14

\* '청년상'은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2024년 7월 15일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신설됨에 2023년과 2024년 접수 및 시상 인원 없음.

※ 출처 : 2026년 4월 8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최근 세계는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GSC: Global Supply Chain)이<sup>1)</sup> 재편되면서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전략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확대, 첨단기술 투자 강화 등과 같은 전략을 추진 중임.<sup>2)</sup>

1)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부터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재화,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 이뤄지는 연결망을 의미함.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붕괴되는 혼란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필수 재화나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였음(산업통상자원부, 『월간 통상』 VOL. 121, 2022년 6월호 중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 관리” 참조).

2) 전정환 외 4인(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3년 12월, 1-2면 참조.

- 그러나, 스위스 국제국가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경쟁력 평가의 ‘국가별 두뇌 유출 지수’를 보면, 한국은 2020년 28위에서 2025년 48위로 하락하였고,<sup>3)</sup> 2025년 발표된 미국 스탠퍼드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은 인구 10만 명당 3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권으로,<sup>4)</sup> 이공계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 아울러, 2025년 대학입시에서 자연계 상위 1% 수험생의 76.9%가 의대를 선택한 반면, 순수 과학기술 분야 학과를 택한 비율은 10.3%에 불과하는 등<sup>5)</sup> 국내 이공계 기반 약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 따라서, 이공계 인재 확보가 국가 및 지역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현시점에서,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 성과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통해 서울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과학기술 인식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상’ 신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나. 세부내용 검토

- 안 제2조제1항제12호는 현재 11개 분야의 ‘시민상’에 ‘과학기술상’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조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과 4차 산업 혁명 촉진, 인공지능산업 등 개별 포상에 머물던 과학기술 분야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포상하여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 인식 확산을 이끌어 과학기술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음.

3)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https://hrstpolicy.re.kr/>)-통계-주요지표-국제-두뇌유출지수(IMD) 2026년 4월 9일 최종방문.

4) Forbes KOREA, “패권을 뒤집을 기술 인재 전쟁 ②”, 2026년 2월 27일자 참조(<https://www.forbe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404>, 2026년 4월 9일 최종방문).

5) Forbes KOREA, “패권을 뒤집을 기술 인재 전쟁 ②”, 2026년 2월 27일자 참조(<https://www.forbe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404>, 2026년 4월 9일 최종방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서울특별시시민 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u>&lt;신 설&gt;</u>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 ----- ----- 1. ~ 11. (생략) <u>12.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u>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표창) 시장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23조(표창)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표창)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과학기술상’은 경제실이 주관부서로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및 시민들의 과학기술 관심 및 이해 제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 성과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로 연구전념 환경 장려를 위하여 ‘과학기술상’을 제정·운영하려고 함.

### 〈 경제실의 ‘과학기술상’ 사업개요〉

- 포상명 : 서울특별시과학기술인상 (훈격 서울시장)
  - 지원대상 : 서울소재 과학기술인\* 중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자
    - 대학교,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 지원규모 : 年 6명(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 지원분야 : 기초과학, 산업기술 등 과학기술 전반
  - 우대내용 : 인증패 수여, 연구성과 홍보, 과학기술분야 강사 우선 초빙 등
- ※ 출처 : 경제실, 「서울시 이공계·첨단산업 인재양성 추진계획」, 2025년 12월, 7면 참조.

- 다만, 2019년 「과학기술기본법」<sup>6)</sup>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과학기술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사회 과학기술 및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바,
  -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없이 단편적인 ‘과학기술상’ 신설만으로 서울시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라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서울시는 종합적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겠음.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6개 광역자치단체 과학기술 진흥 조례 현황 〉

조례명	제정일	조례명	제정일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13. 5. 16.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12. 9. 30.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03. 9. 22.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05. 5. 4.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02. 10. 24.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06. 7. 10.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99. 12. 2.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07. 6. 27.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07. 1. 1.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07. 2. 2.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07. 10. 10.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07. 7. 25.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98. 9. 5.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12. 2. 20.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15. 5. 27.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14. 10. 17.

※ 2026년 4월 9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현행 자치법규 검색 결과 참조

6) 법률 제16526호, 2019. 8.27. 일부개정·시행.

- ‘과학기술상’ 시상 시기를 안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과학의 날’인 4월 21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과학의 날’과 같은 날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 11. (생략) <u>&lt;신 설&gt;</u>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 ----- ----- -----. 1. ~ 11. (생략) <u>12.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 4월 21일</u>

- 다만, ‘과학의 날(4월 21일)’에는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시상 행사가 진행되는바, 같은 대상에게 중복 시상, 시상 행사가 중복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진흥 유공 정부포상 시상을 2026년 4월 21일(화) 제59회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 한다고 예정하고 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910호, 「2026년도 과학기술진흥 유공 정부포상」 계획 공고, 2025년 9월 18일 참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영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23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4월 06일

발 의 자: 소영철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유만희, 이성배,  
이효진, 최유희, 홍국표  
의원(9명)

## 1. 제안이유

-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과학기술 인식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과학기술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시민상 수상대상자에 '과학기술상'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 나. 서울특별시시민상 시상 방법 및 시기에 '과학기술상'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12호 신설).
- 다. 시상종류별 시상인원에 '과학기술상' 6명(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을 신설함(별표 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제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 4월 21일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8	14	69	175
서울특별시봉사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문화상	14	-	14	-
서울특별시환경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복지상	16	2	5	9
서울특별시 어린이및청소년상	94	3	19	72
서울특별시청년상	20	1	3	16
서울특별시성평등상	6	1	2	3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	6	1	2	3
서울특별시건축상	31	1	5	25
서울특별시건설상	16	1	5	10
서울특별시안전상	7	1	2	4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6	1	2	3

※ 봉사상의 경우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선정 가능.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서울특별시시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1. (생략)</p> <p><u>&lt;신설&gt;</u></p> <p>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p>1. ~ 11. (생략)</p> <p><u>&lt;신설&gt;</u></p> <p>[별표 1] 시상종류별 시상인원</p> <p style="text-align: center;"><b>시상종류별 시상인원</b></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종류별</th> <th colspan="4">시상인원</th> </tr> <tr> <th>계</th> <th>대상</th> <th>최우수상</th> <th>우수상</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252</td> <td>13</td> <td>67</td> <td>172</td> </tr> <tr> <td>서울특별시봉사상</td> <td>21</td> <td>1</td> <td>5</td> <td>15</td> </tr> <tr> <td>서울특별시문화상</td> <td>14</td> <td>-</td> <td>14</td> <td>-</td> </tr> <tr> <td>서울특별시환경상</td> <td>21</td> <td>1</td> <td>5</td> <td>15</td> </tr> <tr> <td>서울특별시복지상</td> <td>16</td> <td>2</td> <td>5</td> <td>9</td> </tr> <tr> <td>서울특별시</td> <td>94</td> <td>3</td> <td>19</td> <td>72</td> </tr> </tbody> </table>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2	13	67	172	서울특별시봉사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문화상	14	-	14	-	서울특별시환경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복지상	16	2	5	9	서울특별시	94	3	19	72	<p>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u></p> <p>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 4월 21일</u></p> <p>[별표 1] 시상종류별 시상인원</p> <p style="text-align: center;"><b>시상종류별 시상인원</b></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종류별</th> <th colspan="4">시상인원</th> </tr> <tr> <th>계</th> <th>대상</th> <th>최우수상</th> <th>우수상</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258</td> <td>14</td> <td>69</td> <td>175</td> </tr> <tr> <td>서울특별시봉사상</td> <td>21</td> <td>1</td> <td>5</td> <td>15</td> </tr> <tr> <td>서울특별시문화상</td> <td>14</td> <td>-</td> <td>14</td> <td>-</td> </tr> <tr> <td>서울특별시환경상</td> <td>21</td> <td>1</td> <td>5</td> <td>15</td> </tr> <tr> <td>서울특별시복지상</td> <td>16</td> <td>2</td> <td>5</td> <td>9</td> </tr> <tr> <td>서울특별시</td> <td>94</td> <td>3</td> <td>19</td> <td>72</td> </tr> </tbody> </table>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8	14	69	175	서울특별시봉사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문화상	14	-	14	-	서울특별시환경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복지상	16	2	5	9	서울특별시	94	3	19	72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2	13	67	172																																																																											
서울특별시봉사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문화상	14	-	14	-																																																																											
서울특별시환경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복지상	16	2	5	9																																																																											
서울특별시	94	3	19	72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8	14	69	175																																																																											
서울특별시봉사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문화상	14	-	14	-																																																																											
서울특별시환경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복지상	16	2	5	9																																																																											
서울특별시	94	3	19	72																																																																											

어린이및청소년상				
서울특별시청년상	20	1	3	16
서울특별시성평등상	6	1	2	3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	6	1	2	3
서울특별시건축상	31	1	5	25
서울특별시건설상	16	1	5	10
서울특별시안전상	7	1	2	4

※ 봉사상의 경우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선정 가능.

어린이및청소년상				
서울특별시청년상	20	1	3	16
서울특별시성평등상	6	1	2	3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	6	1	2	3
서울특별시건축상	31	1	5	25
서울특별시건설상	16	1	5	10
서울특별시안전상	7	1	2	4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6	1	2	3

※ 봉사상의 경우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선정 가능.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2조 (시상의 종류 및 인원) 제1항제12호	○	[통상적 사례 토대 추계]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선발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시상대상자에게 상패·메달 수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조례 내용 및 유사 위원회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비용을 추계함 ⇒ 총 36,000천원 소요예상(연평균 7,200천원소요)
2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	[재정소요 영향 미미]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에 따른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시상 횟수 및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시상 관련 비용(안 제2조제1항제12호)

#### 나. 전제

임의규정이나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

- (공적심사위원회) 서울시 유사 위원회 운영 사례 등 활용
  - (위원구성) 위원구성은 15인을 가정(공무원 1인 + 시의원 2인 + 민간위원 12명)<sup>1)2)</sup>
  - (심사횟수) 연 2회(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실시 가정
  - (소요항목) 참석수당 1인 200,000원, 심사수당 1인 100,000원, 시상식 비용 1,200,000원, 상패 및 메달 제작비 1인당 각 150,000원 전제
- (발생기간) 2027년부터 비용 발생, 매년 소요, 추계기간(2027~2031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예상
- (미 고 려) 향후 실제 사업추진 형태(현재 구체적 정책 미수립),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1)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제7조(공적심사위원회)제3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1명으로, 제2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2명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상종류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시상종류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제2항제2호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수당 제외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7년~2031년)

라. 방법

- (자체추계) 서울시 통상적 위원회 운영비 및 유사 위원회 등을 토대로 자체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총 36,000천원(연평균 7,200천원 × 5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위원회 운영 및 시상 관련 비용(안제외)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소계(a)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4.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예시적·제한적 금액
  - 입법취지를 고려 시 해당 안은 선제적 입법<sup>3)</sup>이므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 정책수단, 집행 계획 등이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서울시 유사사례 및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재정분석과에서 정책 추진 형태를 임의로 가정하여 자체 추계하였음
- [추계액 활용유의] 대략적 규모 파악용 자료로 활용 권장
  -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민간위원 수, 위원구성, 회의 개최 주기, 시상 방법 등(다양한 지출결정요인)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4

e-mail : shibedoge06@seoul.go.kr

3) [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입법조치이나,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시상 관련 비용(안 제2조제1항제12호)

###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총 36,000천원(연평균 7,200천원 × 5년)

나. 연도별 소요비용 = ①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 ②업무추진비 + ③시상식 비용 + ④상패 및 메달 제작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위원회 운영비용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 ①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 2,400천원  
= (200천원<sup>4</sup>) + 100천원<sup>5</sup>) × 12명<sup>6</sup>
- ② 업무추진경비 = 1,800천원  
= 30천원<sup>7</sup>) × 15명
- ③ 시상식 개최 비용 = 1,200천원<sup>8</sup>)
- ④ 상패 및 메달 제작비 = 1,800천원  
= 300천원<sup>9</sup>) × 6명

4)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1. 위원회 참석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5)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최초 1시간 10만원
	T/F 자문 역할 수행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 6)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제2항에 따라 공무원(당연직 등), 시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12명에게 지급
-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및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최근 50천원으로 변경(2024. 8. 27. 개정) 되었으나 통상적인 업무추진 예산을 고려하여 30천원으로 적용
- 8) 시상 인원이 동일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시상계획 소요 예산을 참고하여 산출함

사무관리비	○ 교통대책 상황실 운영 등 84,000,000원	=	84,000천원
	○ 교통특별대책 홍보 100,000,000원	=	100,000천원
	○ 교통문화상 시상식 12,200,000원	=	12,200천원

출처 : 2026년 교통특별대책 상황실 운영 예산설명서

9) 서울시 유사 사업 상패 소요 예산을 참고하여 산출함